
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 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손용석(657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2581호

시행일자 2019. 5. 30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개정 안내

-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관련근거: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01851호 (2019.5.15.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97호(2019.5.29.)
- 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85호, 2019.4.30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가. 주요내용:

-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, WATERJET DISSECTION 기구 급여기준 신설
- "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"변경

나. 시행일 : 2019. 6. 1

붙임:개정 고시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